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생활SOC 사용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 5년 분납 허용 및 생활SOC 사용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시 사용요율을 인하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SOC 확충 지원

1)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5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도록 함.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안 제26조제3항)

국유재산에 설치한 생활SOC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에 전대를 허용함.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로 정함.

4) 생활SOC 사용목적 일반재산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안 제55조제2항)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

1)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른 예약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2) 총괄청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총괄청이 위탁받은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관련 수의계약 사유 추가

1) 물납주식 매각 효율화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성장성이 높은 정부 보유 물납주식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2)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안 제40조제3항)

성실한 가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승계 물납자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라. 기타 법령 정비

1) 조달청 위임사무 추가(안 제16조제1항)

조달청 위임사무에 귀속재산 업무 추가

2)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83조)

국유재산 관리 사무 담당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달성시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7.31. ~ 2020.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을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받으려면”을 “받거나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13조 제목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를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획서”를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등에”를 “장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계획서 등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여 하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 등에 대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증축 또는 개축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

4호 및 제5호로 한다.

3.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 중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를 “소유자 없는 부동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 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법 제30조제2항 단서”를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법 제30조제2항 단서”를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이 승인한 기관

제2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8.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제38조제3항 중 “같다) 및”을 “같다),”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가목 중 “제2조제4호다목”을 “제2조제4호더목”으로 하고, 제21호의 라 내지 **사** 및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법인을 경영하고, 해당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한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경우

라. 다목의 물납자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한 경우

제55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6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농어촌정비법」

8.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괄청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실적 등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u>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u>)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u>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등</u>) ----- ----- ----- <u>받거나</u>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 -----.		
제13조(<u>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u>)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u>계획서</u> 를 해당 중앙관서의 <u>장등에</u>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u>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등</u>) ① ----- ----- ----- ---- <u>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 등”이라 한다)</u> 를 해당 중앙관서의 <u>장등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u>계획서 등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교</u>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신 설>

3.·4. (생략)

육부장관에게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 등에 대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증축 또는 개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

④~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

1.·2. (현행과 같음)

3.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
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
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
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대받은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같음)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

5. ----- 소유자
없는 부동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

제26조(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

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

-----.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u>1.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u> <u>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 <u>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u> <u>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u> <u>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u> <u>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u> <u>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u> <u>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한 기관</u>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③ ----- ----- ----- -----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 9. (생략)

④ · 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3의2.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 ⑨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이상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② (생략)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 7. (생략)

④ ~ ⑥ (생략)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17. (생략)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①·② (생략)

③ -----

----- 같다), ---

제외한다)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략)

③ -----

-----.

1. ~ 17. (현행과 같음)

18. -----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
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
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 20. (생략)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
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
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
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
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
사

<신 설>

가. -----

-----제2조제4호다목에

19. ~ 20. (현행과 같음)

21. -----

가. -----

나. -----

다.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
융회사

22. ~ 27. (생략)

<신 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2. ~ 27. (현행과 같음)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법인을 경영하고, 해당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경우 라. 다목의 물납자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한 경우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생략)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60조(개발) ① (생략)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

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60조(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농어촌정비법」

8. 「관광진흥법」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

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총괄청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실적 등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65